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와 관련된 권한의 위임규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14조의8, 제17조, 별표 1의2, 별표2)

-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